2021년도 사업설명회

2021년 연구산업육성(연구산업혁신성장지원) 사업 추진 계획

202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CONTENTS

Ⅰ 사업개요 ---- 3

Ⅱ 사업별 세부계획(안) ---- 7

Ⅲ 추진 일정(안) ---- 24

Ⅳ 기타 사항 ---- 26

Ⅴ 참고 : 사업추진 일정(안) ---- 28



CONTENTS

I 사업개요

Ⅰ 사업개요

사업 목적

-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미래 신서비스 상용화**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공공기술 기반 창업 지원**,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 신규 운영**을 통한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역량강화 및 혁신성장 유도

사업 개요

- **미래연구산업서비스** :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한 새로운 R&D 서비스 테마 발굴 및 육성을 통해 글로벌 R&D 신서비스 시장 선점 및 신산업 단위 서비스 플랫폼 창출 촉진
  * **타당성 검증 지원**(3개월)을 통한 신서비스 상용화 타당성 검토 및 미래연구서비스개발 과제 지원을 통한 **신서비스 상용화 지원(3년, 2+1)**
- **고객수요대응연구** : 기술수요기업과의 기술이전, 연구개발서비스업 창업을 위한 제품제작(연구개발서비스 개발), 성능개량 및 향상 등 사업화에 필요한 추가R&D 지원**(2년, 1+1)**
  * 기술이전형, 창업형 2가지 유형 중 선택 가능
-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21년 신규)** 국내 중소(연구개발서비스업 포함)·중견기업이 **자체 R&D 추진 시** 필요한 연구개발서비스를 연구개발서비스업(연구개발업, 연구개발지원업)이 지원하고, 연구개발서비스 대가는 바우처로 지불
- **글로벌신서비스개발**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연구개발서비스 관련 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수요발굴, 마케팅전략 등) 지원
  * 연구개발업 단독형, 연구개발업과 연구개발지원업간 컨소시엄 중 선택 가능

Ⅰ 사업개요

지원 규모

☞ 연구산업혁신성장지원 내역사업 내 중복신청 불가능

사업명				지원기간	지원금액	지원(과제)건수	지원 대상 기관	비고
연구산업혁신성장지원	혁신제품 서비스개발	미래연구 산업서비스	신서비스 타당성 검증지원	3개월 내외	25	2개 내외	연구개발서비스 기업[1],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2]	신서비스 타당성 검증 지원 과제 최종평가를 통해 미래연구서비스 개발지원 1개 과제 선정 (3년, 2+1 지원)
			미래연구 서비스 개발지원	6개월 내외 (1차년도)	300	1개 내외		
		고객수요 대응연구	기술이전형	8개월 내외 (1차년도)	80	5개 내외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2]	연구개발서비스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 (2년, 1+1)
			창업형[3]			5개 내외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 ('21년 신규)		8개월 이내	50	50개 내외	서비스수요기업 (중소중견기업)과 서비스 공급기업 (연구개발서비스업)	서비스수요기업과 서비스공급기업 (사전) 매칭하여 과제 지원
	글로벌신서비스개발			12개월 내외	172	5개 내외	연구개발서비스 기업[1]	연구개발업과 연구개발지원업 컨소시엄 필수 (연구개발업은 단독 가능)

1)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기업(연구개발업, 연구개발지원업)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3) 창업형 과제 신청시 대학·출연연 연구자 또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연구원 또는 교원 창업 연구자 포함하며 선정 후 협약주체는 교원창업 또는 연구원창업 기업

'21년 중점 추진 방향

- **미래연구산업서비스**
  - 우수한 신서비스 상용화 과제 지원을 위해 타당성 **검증 결과 제출 의무화***
    * 타당성 검증 지원 과제 최종보고서에 기술성, 사업성, 경제성 분석 결과 포함 필수
- **고객수요대응연구**
  - 공공기술 기반 **연구개발서비스업 창업 지원 트랙의 비중* 및 지원 대상** 확대**
    * '21년 신규과제 10개 중 최대 5개 과제 창업형 배정
    ** 창업팀 이외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연구원 또는 교원 창업 연구자 지원 대상 포함(단, 과제 신청 시 교원 창업 또는 연구원 창업 여부 확인 가능한 소속기관 관련 공문 제출 필수)
-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
  - **'탄소중립'** 핵심기술*과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업화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동 과제 수요기업 참여하는 경우 과제 선정평가 시 **3점 가점 부여하여 우대 지원** 예정
    *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 태양광, 풍력, 수소, 바이오매스, 산업효율, 수송효율, 건물효율, 디지털화, CCUS, 융합 혁신(인공광합성, 혁신소재 등)
- **글로벌신서비스개발**
  - 컨소시엄(연구개발업+연구개발지원업) 형태 외에 자체 해외 수요처 확보* 가능한 **연구개발업 단독 참여 가능**
    * MOU, LOI 등 해외수요처 증빙서류 제출 필수



CONTENTS

Ⅱ 사업별 세부계획(안)

지원 내용

- **타당성 검증 지원**(3개월)을 통한 신서비스 상용화 타당성 검토 및 미래연구서비스개발 과제 지원을 통한 신서비스 상용화 지원(3년, 2+1)

〈'21년 과제 지원 계획(안)〉

구분	'21년 지원규모	주요내용	비고
신서비스 타당성 검증지원	50백만원 (25백만원 x 2개)	• 서비스 모델 수립 및 타당성 검증 - 서비스모델·BM 수립 등 사업화 타당성 검토·사업성과 시뮬레이션(타당성검증을위한기술성,시장성, 경제성분석 결과제출필수)	• 지원기간(3개월)
미래연구 서비스 개발 지원	300백만원 (신규600백만원 x6/12x1개)	• 신서비스 타당성 검증 지원과제 최종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 1개선정 • 미래 신서비스 분야 기술개발 및 서비스 상용화 지원	• 2+1년 지원 - 1차년도(6개월) - 2,3차년도(각 12개월) * 2,3차년도 과제당 연 600백만원 지원 • 2차년도 종료 후 단계평가

지원 분야

- 미래연구산업서비스 12대 테마 중 기 선정·지원되고 있는 3개 테마*를 제외한 9개 테마 지원

* 가상인체모델 기반 인체유해성 Quick-Scan 서비스, 상용화 Pilot 및 Scale-up test 지원 서비스, 연구데이터 공유 활용 및 데이터 컨설팅 서비스

지원 분야

☞ 상세한 설명은 연구산업혁신성장지원사업 신청안내서 3~4페이지 참조

미래연구산업 서비스 테마	내용
M&S 기반 가상 실험/분석 서비스	▪ 가상 3D 모델을 구현해 가상 실험·분석을 통해 성능 검증지원 서비스
연구실 안전개발(SMART LAB) 서비스	▪ 첨단센서, AI 등을 활용한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 등 연구안전 수요에 대한 기술개발, 제품 생산 지원을 위한 서비스
클라우드형 R&D평가 플랫폼 서비스	▪ 집단지성을 활용해 R&D 과제기획, 선정평가, 창업/사업화평가 등 R&D 평가 제반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플랫폼 서비스
CPS 시뮬레이터 기반 제조 혁신 지원 서비스	▪ 인공지능 및 가상 물리시스템을 기반으로 가상공정을 제작해 실제 제조공정의 공정수율/불량율 등을 예측하는 서비스
인공지능 기반의 R&D 솔루션 발굴 지원 서비스	▪ 과학기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된 인공지능을 통해 첨단소재 및 물질, 혁신공법 등 R&D 솔루션 발굴을 지원하는 서비스
인공지능 기반 R&D 어드바이저 서비스	▪ 시장·기술의 급격한 환경 변화의 실시간 모니터을 통해 R&D 및 사업화에 필요한 시장·기술 동향 조사, 신제품 기획 및 투자의사결정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지능형 기술거래 및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서비스	▪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자 발굴/매칭을 통해 능동적 기술거래 지원, 미래 시장예측 기반 기술가치 평가를 통한 신기술 창업/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미래형 기술거래/금융 플랫폼 서비스
BioFoundary 기반 합성 미생물 주문연구 서비스	▪ BioFoundary를 기반으로 다양한 목적의 연구용·산업용 맞춤형 합성 미생물, 연구용 생물 자원 등의 설계 및 균주 개발 등을 대행하는 주문연구 서비스
연구자원 공동활용 플랫폼 서비스	▪ 연구시설·장비, 전문인력, 실험자원 등 산재된 연구자원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연계, R&D 기획 및 연구수행 과정에서 최적활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 대상(신청자격)

- 대학·출연(연), 첨단기술 보유기업,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등

* 연구개발서비스기업 이외 기관이 주관기관일 경우, 컨소시엄으로 연구개발서비스기업* 필수 참여**

** 타당성 검증 과제 선정시 서비스기업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없는 경우 탈락 가능(평가 지표 반영)

평가 지표

☞ 상세한 설명은 연구산업혁신성장지원사업 신청안내서 17~18페이지 참조

- 신서비스 타당성 검증 지원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실시(인력구성의 전문성에 대한 정량평가 실시)

* 평가지표(신시장창출 가능성 및 제안기술 우수성, 사업 추진 역량 및 계획 우수성, 상용화 계획 및 성과 목표 타당성, 인력구성의 전문성)

- 미래연구서비스개발 지원 : 타당성 검증 지원과제 최종평가 지표

* 서비스 모델 검증 타당성, 사업수행 역량 및 계획 우수성, 성과창출 및 활용 계획 우수성

제출 서류

☞ 해당 양식은 연구산업혁신성장지원사업 신청안내서 별첨 참조하여 작성 제출

내 용	비 고
• 2021년 연구산업혁신성장지원사업 참여 공문 * 지원 내역사업명(세부 분야) 명시	주관기관 자유 양식
• 미래연구산업서비스-신서비스타당성 검증 지원 과제신청서	별첨1 양식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참여연구원별 학위 증명서 및 전문인력 자격증(이공계 박사, 변리사, 기술사) * 인력구성의 전문성에 대한 정량평가를 위해 제출 필수(미제출시 '0'점' 부여) • 사업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사본 또는 출력본 제출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별첨4 양식
• 과제 상세 데이터(엑셀 양식 별첨)	엑셀 별첨

II 사업별 세부 계획안 – (2) 고객수요대응연구

지원 내용

- 대학·출연연 보유 연구성과 중 사업화 유망기술의 사업화(기술이전, 창업)에 필요한 고객 수요기반 추가 R&D 지원(**연 1.2억원 내외, 2년, 1+1**)

〈'21년 과제 지원 계획(안)〉

유형	지원규모	추진내용	지원 대상
기술 이전형	**400백만원 (신규 120백만원 x 8/12 x 5개 내외)**	· 공공연구성과 중 사업화 유망기술의 시제품 제작, 성능 개량 등 수요기반 추가 R&D 지원을 통한 기술이전 형태의 기술사업화 성과 제고	대학·출연(연) 연구자 단독 또는 연구산업기업 (기술수요기업 등)과의 컨소시엄 구성
창업형	**400백만원 (신규 120백만원 x8/12 x 5개 내외)**	· 대학출연연 연구자 단독* 또는 연구산업기업(연구개발업, 연구개발지원업, 수요기업)과의 컨소시엄으로구성된연구개발서비스업창업팀지원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연구원 또는 교원 창업 연구자 포함 · 창업기업의 상세 사업계획(BM 포함) 수립 및 타당성 검증, 투자유치 지원, 연구개발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화 R&D 지원	대학·출연연 연구자 단독 또는 연구산업기업(기술수요기업, 연구개발업, 연구개발지원업 등)과 컨소시엄 구성

지원 분야

-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성과로 **지원 대상(기술)의 핵심특허는 과기부 R&D 성과로 한정**

  * 기존, 고객수요대응연구(구, 추가R&D 또는 기술업그레이드R&D)과제 지원받지 않은 기술 지원 불가

성과 목표(필수 사항)

- 기술이전형 : 1차년도 지원 종료 이전 **매칭된 기술이전 기업과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필수**
  * 특별한 사유 없이 1차년도 종료 이전 기술이전 계약 미체결시 과제 실패에 해당
- 창업형
  - 1차년도 : 과제 신청시 선택한 **연구개발서비스업(연구개발업 또는 연구개발지원업) 신고** 완료
    * 특별한 사유 없이 1차년도 종료 이전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미완료시 과제 실패에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요건은 연구산업혁신성장지원 사업신청서 7페이지 참조)
  - 2차년도 : **연구개발서비스 매출** 실현
- 공통사항 : 일자리 창출 성과 제시 필수
  * 기술이전형은 기술이전 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신규 고용 성과 인정

지원 대상(신청자격)

<table>
<tr><th>구 분</th><th>지원 대상</th><th>연구책임자</th><th>비고</th></tr>
<tr><td>기술
이전형</td><td rowspan="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기술수요기업 이외에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업, 연구개발지원업에 한함</td><td>· 신청 기술을 보유한 지원 대상 기관 소속 연구자</td><td rowspan="2">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1항에 의한 과제수 상한제(3책 5공) 미적용*
* 대학·출연연 등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신청한 과제(컨소시엄 구성)만 미적용
(기술이전 매칭기업 인정 불가)</td></tr>
<tr><td>창업형</td><td>· 과제 신청시 : 신청 기술을 보유한 기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원(교원)창업한 연구자
· 협약체결시 : 창업 기업 대표*
(협약체결 전 지정하는 기간까지 사업자 등록(개인사업자) 완료 필수)
* 과제 신청 시 연구 책임자와 동일 (단, 소속기관 창업 절차에 의해 연구 책임자 변경하여 협약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 관련 증빙 자료 제출 必)</td></tr>
</table>

II 사업별 세부 계획안 – (2) 고객수요대응연구

평가 지표

☞ 상세한 설명은 연구산업혁신성장지원사업 신청안내서 19~20페이지 참조

- 기술이전형 : **기술혁신성 및 완성도,** 추가연구개발 필요성, 사업화 가능성, **시장경쟁력**,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 창업형 : **기술완성도 및 활용 가능성, 창업 추진 역량**, 추가연구개발 필요성, 사업화 가능성,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제출 서류

☞ 해당 양식은 연구산업혁신성장지원사업 신청안내서 별첨 참조하여 작성 제출

내 용	비 고
• 2021년 연구산업혁신성장지원사업 참여 공문 * 지원 내역사업명(세부 분야) 명시	주관기관 자유 양식
• 고객수요대응연구 과제신청서	별첨2 양식
• (기술이전형) 공공연구기관-수요기업 간 기술이전 시기(2021년 이내 필수 기재), 금액, 계약 방법 등이 명시된 기술이전 의향서(확약서) • (창업형) 기 창업된 연구원 또는 교원 창업 기업의 경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창업 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원소속기관으로부터 받은 연구원 또는 교원 창업 승인 관련 공문	사본 제출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별첨4 양식
• 과제 상세 데이터(엑셀 양식 별첨)	엑셀 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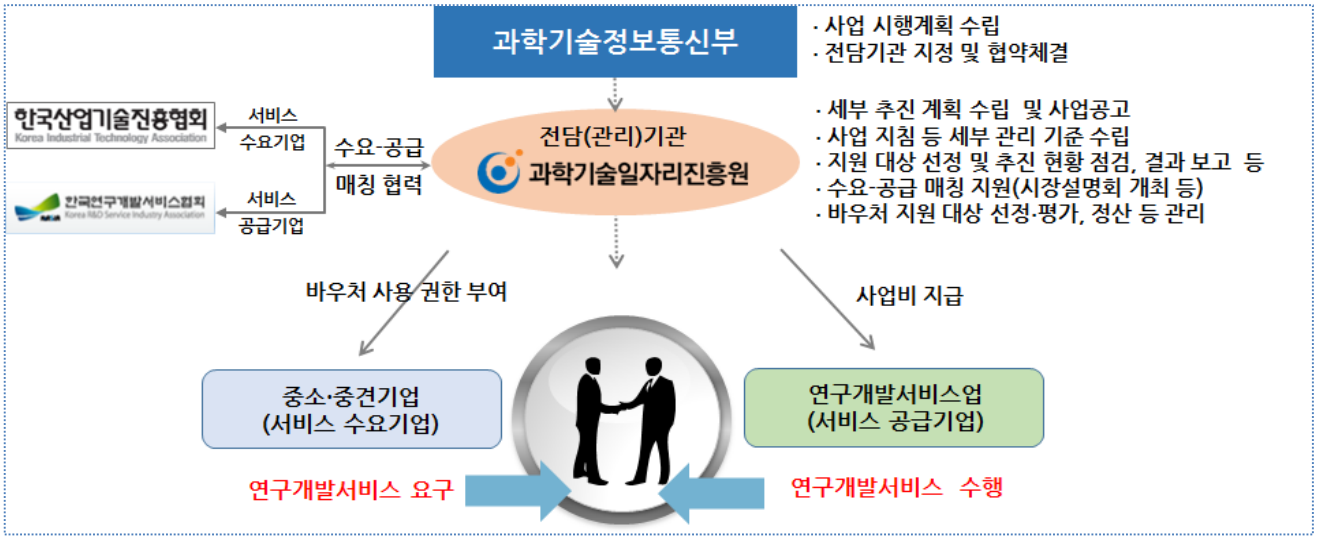
II 사업별 세부 계획안 – (3)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

지원 내용

- 국내 중소(연구개발서비스업 포함)·중견기업이 **자체 R&D 추진 시** 필요한 연구개발서비스를 **연구개발서비스업(연구개발업, 연구개발지원업)에 지원**하도록 요청하고, **연구개발서비스 대가**는 **바우처**로 지불

- **서비스 수요기업(중소·중견기업, 주관기관)** : 서비스 공급기업으로부터 사업화 대상 기술(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제공 받은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주체임
  * 바우처 사용 권한 부여, 서비스 수요에 대한 기업 자부담금 적용(매출액 규모별 5~20%)
- **서비스 공급기업(연구개발서비스업)** : 서비스 수요기업에 연구개발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바우처(정부지원금+수요기업 자부담금)를 지급 받음

<2021년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 추진체계>



II 사업별 세부 계획안 – (3)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 규모 : 2,500백만원(**50백만원 내외×50개 과제 내외**)
  * 과제별 지원 한도 50백만원
- 지원 기간 : **8개월** 이내
  * 서비스 수요기업이 지정하는 서비스 완료일자가 있는 경우 기관 간 협의하여 8개월 이내에서 조정하여 신청 가능

지원 분야 및 단가

- 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지원까지 연구개발 서비스 전 분야 지원
  * **탄소 중립** 연관된 신청 건에 대해 **가점 부여(3점)하여 우대** 지원 : **'탄소중립'** 핵심기술*과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업화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동 **과제 수요기업** 참여하는 경우 과제 선정평가 시 **3점 가점 부여하여 우대 지원 (사업신청서 제출시 해당 내용 작성 필수)**
  *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 태양광, 풍력, 수소, 바이오매스, 산업효율, 수송효율, 건물효율, 디지털화, CCUS, 융합 혁신(인공광합성, 혁신소재 등)
- **서비스수요기업과 공급기업(수행기업) 매칭 후 지원한도(50백만원)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 자율 구성** 과제 신청

* 예시) 서비스 수요기업 C의 서비스 수요가 사업화 지원 분야의 성능평가 인증(20백만원)과 사업화 컨설팅 A형(30백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공급기업 D와 매칭하여 한도내에서 2개 서비스에 대해 1개의 과제로 신청 가능(단, 1개의 서비스 수요기업과 1개의 서비스 공급기업만 매칭하여 과제 신청 가능)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수요 발굴 및 매칭 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요-공급기업 매칭 지원 (연구산업혁신성장지원 사업신청서 12페이지의 연구개발서비스 매칭 지원 절차 참조)

II 사업별 세부 계획안 – (3)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



<2021년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 지원분야 및 단가>

분야	상세 서비스	주요 내용	서비스단가 (백만원)	서비스 공급기관
사업화 지원	성능평가, 인증	BT(비임상시험, 안정성·독성 시험 지원), NT(시험분석 및 신뢰성 인증 등 성능시험 분석평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성평가 지원	20	연구개발업, 연구개발 지원업
	인허가 컨설팅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글로벌 임상, 인허가 컨설팅	50	
	IP 관리 컨설팅	사업화 대상 기술(IP) 국내·외 동향조사·경쟁력 분석 및 사업화 전략 수립 * 출원, 등록비용은 지원 제외	20	연구개발 지원업
	사업화 컨설팅	A형 : BM 개발 및 기술이전 또는 창업 등 사업화 전략, 사업 계획 수립, 자금조달(투자 유치) 지원	30	
		B형 : 제품 관련 국내외 시장조사, 수요 발굴 등 홍보·마케팅 * 단순 홍보물 제작비용(브로셔, 팜플렛 등) 제외 ** 디자인 개선 및 브랜드 개발 비용 제외	30	
기술 개발 지원	신기술 (신제품) 개발 R&D 지원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아이디어 구체화, 타당성 검증 등 초기단계 지원 및 공정 등 제품 개발 과정에서 애로사항 해결	50	연구 개발업, 연구개발 지원업
	기존기술 (기존제품) 개선 R&D 지원	기존기술(제품) 개선(또는 고도화) 관련 타당성 검증 및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공정,	50	
	시제품 제작 지원	신기술 사업화 제품 생산 및 기존 제품성능 개선(완성도 향상)에 필요한 제품 설계 (구조, 규격 등) 및 시제품 제작	40	

연구개발서비스 매칭 지원

- 사업 신청 시 바우처에 참여할 서비스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구성되지 않아 매칭신청서(온라인)를 제출하는 기업에 대해 KOITA(서비스 수요기업),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서비스 공급기업)가 기업 정보 제공(매칭신청서 제출 10일 이내 정보 제공 예정)

*** 온라인 매칭신청 마감일 : 2월 17일(수)**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 매칭 지원 프로세스>

사업공고 (2021.1.29)	매칭신청서 제출 (2021 2월 중)	기관별 매칭 가능한 기업 정보 제공 요청(2021. 2월 중)	매칭 결과 제공 (2021. 2월 중)
매칭신청서 포함	전담기관에 매칭신청서 제출(온라인) (단 사업 공고 종료 3주 이내 제출 必) * 제출 마감일(2월 17일)	제출된 매칭신청서를 토대로 서비스 수요기업 (KOITA), 서비스 공급기업(연구개발서비스협회) 매칭 가능한 연관기업 정보 제공 요청	매칭신청서를 제출한 서비스수요기업과 서비스공급기업에 매칭 가능한 기업 정보 제공

지원대상선정평가 (2021. 3월)	지원 신청 및 접수 (2021. 2월~3월)	오프라인 행사 개최 (2021. 2월 중)	온오프라인 매칭지원 (2021. 2월 중)
서비스 수요기업 사업화 역량 및 서비스 공급기업 역할 평가 반영	매칭기업과의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 지원 신청서 제출	필요시 오프라인 행사운영 (서비스수요기업-서비스공급기업 참여, 사업 참여 방안 협의 등)	별도 요청하는 경우 온오프라인 매칭지원 예정

* 기한 내 공급기업 정보 제공 요청을 위한 매칭신청서 제출이 어려운 수요기업은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홈페이지 (http://www.rndservice.or.kr/)의 공급기업에 대한 매칭시스템 이용 가능

II 사업별 세부 계획안 – (3)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신청자격)

구 분	지원 대상	비고
서비스 수요기업	· 과제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자체 R&D를 수행하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 과제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과제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자체 R&D 수행을 하고 있는 경우 **연구개발서비스업**	**자체 R&D 수행 여부는 과제신청서의 기업개요 반영 필수**(작성 내용이 미흡한 경우과제탈락가능)
서비스 공급기업	·과제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 신고 완료된 연구개발서비스업 (연구개발지원업 또는 연구개발업)**	신고증 사본 제출 필수

지원 제외 대상

- 기타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자본전액잠식, 부채 1,000% 이상, 국가 R&D 참여제한 기업 및 대표자 등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 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에서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관련 내용 확인할 수 있는 서류(확인서 등) 제출 필수
- 신청 과제가 연구산업육성사업 기존 지원 과제와 유사·중복인 경우

평가 지표

☞ 상세한 설명은 연구산업혁신성장지원사업 신청안내서 17, 20페이지 참조

• 사전 검토하여 요건 충족하는 과제에 대해 선정평가 실시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에 대한 사업 신청자격, 공고와의 부합성 등 항목을 검토

구분	적격성 기준
서비스 수요기업	· 서비스 수요기업 신청 자격요건 부합 여부 · 채무불이행 여부 · 참여제한 조건 검토(부정당사업체, 휴업 중인 기업, 세금체납 기업)
서비스 공급기업	· 서비스 공급기업 신청 자격요건 부합 여부 · 채무불이행 여부 · 참여제한 조건 검토(부적격사업체, 휴업 중인 기업, 세금체납 기업)

• 평가지표

- 서비스 수요기업 사업화 역량, 바우처 서비스 공급기업의 우수성, 바우처 사업 지원 적합성, 사업화 계획의 적절성 및 시장 창출 가능성, 서비스 수요 맞춤형 추진 계획의 우수성, 중점 지원 대상 우대 사항

제출 서류

☞ 해당 양식은 사업별 신청사업안내서 별첨 1-1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 신청안내서 10페이지와 별첨 양식 참조

순번	제출서류	양식	제출 대상
1	사업신청서(별도 양식 제공) * 신청공문은 해당 기관 자유 양식 활용	1부(별첨 1)	서비스 수요기업 (주관기관)
2	서비스 수요기업 매칭신청서	1부(별첨 2-1)	서비스 수요기업(필요시 제출)
	서비스 공급기업 매칭 신청서	1부(별첨 2-2)	서비스 공급기업(필요시 제출)
3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1부	서비스 수요기업 (해당하는 내용 선택하여 1개 제출)
4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각 1부	공통
5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1부	서비스 공급기업
6	사업자등록증	1부	공통
7	채무불이행여부확인서* * 기업신용평가社로부터 채무불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ex. 예비평가보고서, 약식신용평가서, 신용분석보고서 등)	1부	공통
8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공통
9	연구개발서비스 상세 수요요청서 *서비스공급기업에요청하는상세서비스분야작성제출	1부 (별첨 3)	서비스 수요기업
10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별첨 4)	공통
11	개인(기업)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별첨 5)	공통
12	참여의사 확인서	1부 (별첨 6)	서비스 수요기업
13	기타 증빙자료	1부	지원 제외 대상 중 예외 인정 가능한 경우 관련 증빙 제출 필수

지원 내용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연구개발서비스 관련 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수요 발굴, 마케팅전략 등)** 지원

  * 해외수요 발굴-수요대응R&D 과제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업과 연구개발지원업 매칭테이블 운영 예정

〈'21년 과제 지원 계획(안)〉

구 분		'21년 지원규모	주요내용
글로벌 신서비스 개발	해외 R&D 서비스 수요 발굴 및 사업화 지원	860백만원 (5개 컨소시엄 내외 x 172백만원 내외)	. 국내 연구개발업 기업의 해외 진출 대상국 및 적합기술 도출 . 연구개발업과 협력한 해외수요 발굴 및 기술·서비스 마케팅 전략 도출
	해외 수요대응 R&D		. 해외 수요대응 R&D 수행 . 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시연 및 전수 활동 강화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 차등지원 가능

※ 컨소시엄(연구개발업+연구개발지원업)별 최대 지원금은 200백만원

- (컨소시엄) 연구개발지원업: 최소 50백만원 책정/연구개발업: 최대 150백만원 책정
- (연구개발업 단독) 최대 150백만원 책정

※ 연구개발업 단독(해외 수요대응 R&D) 유형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연구개발업 단독 신청시, 해외수요처 증빙(MoU, LOI, Agreement 등) 서류 제출 필수

II 사업별 세부 계획안 – (4) 글로벌신서비스개발

지원 분야

- 해외 R&D서비스 수요발굴 및 사업화 지원
  - 기술 및 기술서비스 수출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대상국의 시장 동향 조사 및 기술수요 발굴 등을 지원
- 해외 수요대응 R&D
  -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이 대상국의 기술·서비스 개발 수요에 대응하는 R&D 수행 지원

지원 대상(신청자격)

구 분	지원 대상	비고	공통사항
해외 R&D 서비스 수요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지원업	• 접수마감일 기준,「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지원업으로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기업	• 연구개발업 단독과제는 과제 신청서 해외 수요처 증빙 제출 필수 • '20년도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지 않은 기업 • '21년도 '연구산업혁신성장지원' 내역사업 내 중복신청 불가능
해외 수요대응 R&D	연구개발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업으로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기업 ※ 단, 시험·분석 관련 업종의 경우 '해외수요대응 R&D'로 지원 가능	

II 사업별 세부 계획안 – (4) 글로벌신서비스개발

평가 지표

☞ 상세한 설명은 연구산업혁신성장지원사업 신청안내서 18~19페이지 참조

- 정성평가 평가지표 : 사업추진 역량, 해외시장 개척 전략의 적절성
- 정량평가 평가지표 : 인력구성의 전문성, 해외 R&D서비스 역량

제출 서류

☞ 해당 양식은 연구산업혁신성장지원사업 신청안내서 별첨 참조하여 작성 제출

내 용	비 고
• 2021년 연구산업혁신성장지원사업 참여 공문 * 지원 내역사업명(세부 분야) 명시	주관기관 자유 양식
• 글로벌신서비스개발 과제신청서	별첨2 양식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참여연구원별 학위 증명서 및 전문인력 자격증(이공계 박사, 변리사, 기술사) • 사업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사본 제출 가능
• 최근 3년간 해외 R&D서비스 실적 - 해외에서 발굴한 R&D서비스(기술용역, 기술거래 등) 수요, 기술시장 조사, 인적·물적 네트워크 보유 및 협력 등 실적 증빙서류	자유 양식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별첨4 양식

III 추진 일정(안)

사업공고 및 제출안내

- **(공고기간)**
  - 미래연구산업서비스, 고객수요대응연구, 글로벌신서비스개발 : 2021년 1월 29일(금) ~ 3월 2일(화) (33일간)
  -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 : 2021년 1월 29일(금) ~ 3월 9일(화) (40일간)
  - *** 1차 공고를 통해 잔여 예산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공고 예정**
- **(제출기한)**
  - 미래연구산업서비스, 고객수요대응연구, 글로벌신서비스개발 : 2021년 2월 22일(월) ~ 3월 2일(화) 16:00
  -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 : 2021년 3월 2일(화) ~ 3월 9일(화) 16:00
- **(제출서류)** 공문을 포함하여 각 사업별 제출서류 일체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전자파일 제출
- **(제출방법)** 미래기술마당(http://rnd.compa.re.kr)을 활용한 온라인 과제 접수
  - *** 별첨 참고 2의 미래기술마당 과제접수 방법 참조**

선정평가 절차안내

☞ 상세한 설명은 연구산업혁신성장지원사업 신청안내서 16페이지 참조

- **미래연구산업서비스, 고객수요대응연구, 글로벌신서비스개발 :** 사전검토→**서면평가→발표평가 순**으로 진행
  - **(사전검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 · 단체 · 연구자에 대한 **참여 제한 해당 여부,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검토**
  - **(서면평가) 사전검토 통과한 과제계획서 서면** 평가 (60점 미만 탈락, 2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 선정)
    - * 제출된 신청건수가 지원 건수의 2배수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서면평가 제외 가능
  - **(발표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세부 사업계획서 검토 * 코로나 19 심각 상황 지속시 비대면 평가 가능**
- **(최종선정) 발표평가 우선순위로 최종 선정**(단, 평가결과 60점 미만 과제는 제외)

III 추진 일정(안)

선정평가 절차안내

☞ 상세한 설명은 연구산업혁신성장지원사업 신청안내서 16~17페이지 참조

-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 :** 사전검토→**서면평가→발표평가 순**으로 진행

-(사전검토) 사업 신청자격, 공고와의 부합성 등 항목을 검토

- (서면평가) 사전검토 통과한 과제계획서 서면 평가 (60점 미만 탈락, 2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 선정)

* 제출된 신청건수가 지원 건수의 2배수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서면평가 제외 가능

- (발표평가) 수행책임자 발표 및 세부 사업계획서 검토 * 코로나 19 심각 상황 지속시 비대면 평가 가능

*** 선정 평가 결과 현장 점검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원 과제의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과제 지원 적정' 의견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 **(최종선정) 발표평가 우선순위로 최종 선정**(단, 평가결과 60점 미만 과제는 제외)

과제계획 접수	사전 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최종선정
세부사업별 온라인 과제 접수	사업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공고 부합성 검토	과제계획서(신청서) 정량, 정성 평가	연구(수행)책임자 발표평가 *필요시현장점검가능	세부사업별 지원 대상 과제 최종 선정 통보
전문기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과기정통부, 진흥원
21년3월	21년 3월	21년 3~4월	'21.3~4월	'21.3~4월 末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이 상이하여 전문기관 담당자별로 선정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및 안내 별도 예정

Ⅳ 기타사항

관련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1.1)
-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기술료 징수

- 미래연구산업서비스 '신서비스 타당성 검증지원' 기술료 면제
- 글로벌신서비스개발 '해외수요 발굴' 기술료 조건부* 면제

  * 컨소시엄 구성기관인 해외수요 대응 R&D 수행기관 동의에 따라, 해외수요 발굴 보고서 공개 시에만 면제 (NTIS 등 일반 공개 시)
-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지 않아 기술료 면제

기타

-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별도 사업안내서에 의해 관리·운영(별도 제공)**

문의처

구분	담당자 및 오프라인 서류 제출 주소
미래연구산업서비스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연구산업육성팀 : 02-736-9026(나숙경 선임연구원)/ 이효규 연구원(02-736-9108)
	☞ 주소 : (03737)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13 삼창빌딩 7층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연구산업육성팀
고객수요대응연구,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연구산업육성팀 : 02-736-9026(나숙경 선임연구원)/ 박찬홍 연구원(02-736-9044)
	☞ 주소 : (03737)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13 삼창빌딩 7층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연구산업육성팀
글로벌신서비스개발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사무국: 02-779-9070(이유경 주임)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관련 문의 포함
	☞ 주소 :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Ⅴ 참고 : 사업추진 일정(안) – (1) 미래연구산업서비스

타당성 검증 지원 과제 공고 및 접수('21.1.~3)	• 대상 : 대학.출연(연), 기술 보유기업,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등(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 공문, 과제신청서(계획서), 정량지표 관련 증빙 서류 등
▼	
과제 선정 및 협약 ('21.3.~4)	• 선정평가를 통해 과제 선정(서면평가, 발표평가) • 협약체결(협약기간 : 2021.4.1.~2021.06.30.) 및 연구비 지급
▼	
과제 수행 ('21.4.~6)	•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수행(주관기관) - 신서비스 상용화 타당성 검토 추진
▼	
타당성 검증 지원 최종평가('21.6)	• 타당성 검증지원 내용 및 성과에 대한 최종평가를 통한 미래연구서비스개발지원 과제 선정 **('21년 6월말 예정)**
▼	
미래연구서비스개발 지원 과제 협약 체결('21.7)	• 미래연구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및 1차년도 연구비 지급(3억원) - 협약기간(2021.7.1.~2022.12.31.)
▼	
과제 수행 ('21.7.~12)	• 과제계획서에 따른 사업수행(주관기관) - 신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1차년도 연구개발 수행
▼	
현장점검 ('21.11)	• 과제 수행 주관기관별 연구개발 추진 현황 및 연구비 집행 현황 현장 점검
▼	
연차보고서 제출 ('21.12)	•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1차년도 연차보고서 제출

V 참고 : 사업추진 일정(안) – (2) 고객수요대응연구

과제 공고 및 접수 ('21.1.~3)	• 대상 : 대학·출연(연) 등 공공 TLO,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연구산업기업 ※ 접수 마감 前 까지 미래기술마당 등록한 기술에 한함 - 공문, 과제신청서(계획서), 기술이전형(기술이전확약서) 등
과제 선정 및 협약 ('21.4.~5)	• 선정평가를 통해 과제 선정(서면, 발표평가) ※ 적정 지원과제 미 선정 시, 추가적으로 지원과제 선정 예정 • 1차년도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8천만원) - 협약기간(2021.05.01.~2021.12.31) ※ 창업형의 창업팀의 경우 지정된 일자까지 사업자 등록 완료 한 경우 협약체결 가능
1차년도 과제 수행 ('21.5.~12.)	• 주체 : 주관기관(대학, 출연(연), 창업기업 • 유형별 사업화 R&D 수행 - 기술이전형 : 매칭기업과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 및 수요기반 추가 R&D 추진(시제품 제작 및 성능 개량 등) - 창업형 : 연구개발서비스업 창업(신고 완료) 및 창업기업의 사업화 R&D 추진
현장점검 ('21.11)	• 창업형 과제 수행 주관기관 연구개발 추진 현황 및 연구비 집행 현황 현장 점검
단계평가 ('21.12)	• 1차년도 수행결과에 대한 단계평가 실시(´21.12월) - 지원유형별 1차년도 성과 목표 달성하여 '성공 ' 판정된 과제에 대해 2차년도 지원 예정
2차년도 협약체결 ('22.1) 및 과제 수행	• 2차년도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1.2억원) - 협약기간(2022.1.1.~2022.12.31.)

Ⅴ 참고 : 사업추진 일정(안) – (3)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

사업공고 **(´21.1.)**	•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 지원내용 및 지원 과제 모집 안내(40일 공고)
▼	
수요-공급 매칭 **(´21.2, 필요시)**	• 서비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사전 매칭 되지 않아 매칭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대상으로 매칭 지원 - 서비스 수요기업(KOITA), 서비스 공급기업(연구개발서비스협회) 정보를 제공 받아 매칭 지원 ※ 매칭 신청이 다수인 경우 오프라인 매칭행사 개최 예정
▼	
과제 접수 및 선정 **('21.3.~4.)**	• 온라인 과제 접수 및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 과제 선정(서면평가, 발표평가) ※ 1차 공고로 사업비가 모두 소진되는 않는 경우 추가 공고 진행 예정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21.5.)**	• 3자 협약 체결(진흥원↔서비스 수요기업↔서비스 공급기업) - 서비스 수요기업 : 협약체결을 토대로 바우처 발급 및 사용 신청 - 서비스 공급기업 : 사업비 선금 신청 ※ 협약체결 금액 중 정부지원금의 70% 이내 지급 예정 • 사업 수행(서비스 공급기업→서비스 수요기업) ※ 매월 1회 진도점검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제출(서비스 수요기업)
▼	
이행점검(현장 실태조사) **('21.9.~10,** **별도 일정 안내)**	• 서비스 공급기업의 서비스 수행여부 점검을 위해 현장실태조사 실시 예정 • 실태조사 결과, 과제 수행 상태가 '미흡'한 경우 후속조치 이행 및 최종평가 반영 예정
▼	
서비스 만족도 조사 **(서비스 종료 후)**	• 서비스 공급기업 수행 서비스에 대해 수요기업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 추진 ※ 과제별 수행기관 수행 종료 후 진행 예정
▼	
최종평가 및 정산 **(사업 종료 후)**	• 수행 후 결과보고(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 ※ 최종평가 '성공'한 과제에 대해 사업비에 대한 정산 완료 후 잔금 지급 예정

V 참고 : 사업추진 일정(안) – (4) 글로벌신서비스개발

과제 공고 및 접수 ('21.1.~3.)	• 대상 : 연구개발업과 연구개발지원업(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 공문, 과제신청서(계획서) 등
▼	
과제 선정 및 협약 ('21.3.~4.)	• 선정평가를 통해 과제 선정(서면평가, 발표평가) ※ 적정 지원과제 미 선정 시, 추가적으로 지원과제 선정 예정 • 협약체결(2021.4.1.~2022.3.31) 및 사업비 지급
▼	
과제 수행 ('21.4.~'22.3.)	•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수행(주관기관) - 연구개발서비스업 해외 진출 역량강화를 수요발굴 및 수요대응 R&D 수행
▼	
현장점검 ('21.9.~10.)	• 과제 수행 주관기관별 연구개발 추진 현황 및 연구비 집행 현황 현장 점검
▼	
최종평가 ('22.3.~4.)	• 수행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실시 - 사업 추진 내용 및 성과 최종평가
▼	
기술료 징수 ('22.5.~6.)	•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된 과제에 대한 사업비 정산 후 기술료 징수 추진 예정



감사합니다